

# 「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발 의 자: 김정도 · 김영길 · 김재우 · 김춘남 · 이명희 ·  
이지연 · 장미경 · 장세구 · 허민근 의원(9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### 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보장하고,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재 양성 및 진로 · 진학 지원,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 지원, 통학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다. 주요내용

-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## 라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
-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구미시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인재 양성,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애 이견이 없으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## 5. 토 론 요 지: 생 략

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-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로 인한 대상자 선정 및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교육청과 중복되거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. 시행규칙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##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